

윤석열 · 김건희에 의한 내란 · 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766
----------	-------

발의연월일 : 2026. 3. 26.

발 의 자 : 강득구 · 김남희 · 김병주
김준혁 · 박균택 · 박선원
박희승 · 부승찬 · 이상식
이용우 · 전진숙 · 채현일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윤석열 · 김건희에 의한 내란 · 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특별검사는 기존의 소위 ‘3대 특검’ 수사를 이어나가는 종합특검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으로는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원활히 확보하기 어려워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가 제외되어 있고, 관련 사건에 ‘범인도피죄’가 명시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특별검사의 의지가 공판 과정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과 파견된 군검사에게 직접 공소유지 권한

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방대한 수사 범위를 고려할 때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법경찰관 등 파견공무원의 증원이 절실함.

이에 3대 특검의 기록 제공 의무를 명문화하고, 수사대상 확대 및 공소유지 체계를 강화하며 파견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특별검사가 법정 수사 기간 내에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직권남용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관련 사건의 범위에 ‘범인도피죄’를 명시함(안 제2조제1항제15호 및 제3항제1호).

나.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특별검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5항).

다. 특별검사가 특별수사관 중에서 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8조제2항).

라.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들이 수사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5호 중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를 “수사 및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지연·은폐·비호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범인은닉죄”를 “범인은닉죄, 범인도피죄”로 한다.
제6조제5항 본문 중 “경찰청”을 “경찰청, 국방부”로 하고, 단서 중 “130명”을 “150명”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소유지 변호사) 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하여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소유지 변호사는 담당한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파견검사”를 “파견검사와 파견군검사”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수사기록 등에 관한 특칙) ① 3대 특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

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하 “수사기록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가 수사기록 등을 제공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기록 등을 열람·복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소유지 사건의 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특별검사는 재판장에게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특별검사는 제공받는 수사기록 등을 제18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특별검사에게 제공한 수사기록 등에 대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3대 특검법상 이를 검찰총장에게 인계할 각 의무를 면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에 한정한다. 1. ~ 14. (생략)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u>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비호하거나</u> ,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 17. (생략) ② (생략) ③ 이 법에서 “관련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u>범인은닉죄</u> ,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 4. (생략)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① - ----- ----- -----. 1. ~ 14. (현행과 같음) 15. ----- ----- ----- ----- <u>수사 및 감사를 고의적으로 방해·지연·은폐·비호하거나</u> ----- ----- ----- 16.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u>범인은닉죄</u> , <u>범인도피죄</u> ----- ----- -----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 ④ (생략)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5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130명 이내로 한다.

⑥ · ⑦ (생략)

<신 설>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생략)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illegible]

⑥·⑦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공소유지 변호사) ① 특

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 사
건의 공소유지를 위하여 특별수
사관 중에서 공소의 유지를 담
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소유지 변호사는
담당한 사건의 종국재판이 확정
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검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제8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원에 제출된 경우 특별검사는 재판장에게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특별검사는 제공받는 수사기록 등을 제18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특별검사에게 제공한 수사기록 등에 대하여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는 3대 특검법상 이를 검찰총장에게 인계할 각 의무를 면한다.